



손해보험의 이해 13: 해상보험의 개념 및 종류

김동겸 선임연구원

■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이란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임.¹⁾

- 해상보험계약이란 보험회사가 선박 또는 화물에 대한 위험을 담보한 후, 보험기간 중 담보위험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정하고 그 대가로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취하는 계약을 일컬음.²⁾
 - 육상운송보험의 경우 운송물만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해상보험의 경우 적하 및 운송용구인 선박도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음.

■ 해상보험은 “피보험이익”³⁾이나 보험가입대상을 기준으로 적하보험(cargo insurance), 선박보험(hull insurance), 운임보험(freight insurance), 희망이익보험(profit insurance), 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적하보험은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 중 각종 해난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화물의 손상에 대비하기 위해 화주(shipper)가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부담하고 해난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기 위한 보험임.
- 선박보험은 해상운송사업자가 선박의 해상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선박의 물적손해, 비용손해, 손해배상책임손해 등의 위험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용하는 보험임.

1) 상법 693조에서는 해상보험을 항해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적 계약·제도로 정의하고 있음.

2) 한편,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MIA 1906)에서는, “해상보험계약은 계약에 의해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사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있음(A Contract of marine insurance is a contract whereby the insurer undertakes to indemnify the assured, in the manner and to the extent thereby agreed, against marine losses, that is to say, the losses incidental to marine adventure).

3)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이란 보험의 목적에 대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가지는 경제적 이익을 의미함.

- 선박을 담보하는 보험의 종류는 선박건조자보험(builder's risk policies),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 중에 발생하는 위험만을 담보하는 보험(port risk only policies), 선단보험(fleet policies)으로 재분류할 수 있음.

- 운임보험이란 해상위험으로 인해 받을 수 없게 되는 운임⁴⁾을 피보험이익으로 하는 보험임.
- 희망이익이란 무역업자가 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한 경우 이를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이익으로서, 이 같은 희망이익을 피보험이익으로 하는 보험을 희망이익보험이라 칭함.
- 한편, 책임보험은 충돌(collision), P&I(Protection and Indemnity), 해양오염(water pollution) 등과 같이 선박이나 선원의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하는 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임.

■ 또한, 해상보험은 보험기간을 기준으로 항해보험(voyage insurance), 기간보험(time insurance), 혼합보험(mixed insurance)로 분류할 수 있음.

- 항해보험은 항해단위를 표준으로 하는 보험으로 주로 적해보험에 많이 이용되며, 기간보험은 일정한 기간을 표준으로 하는 보험으로 주로 선박보험에 이용됨.
- 한편, 혼합보험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로 하되, 양륙 후 90일을 한도로 한다” 등과 같이 일정기간과 항해 모두를 기준으로 하는 보험임.

〈표 1〉 물건에 따른 해상보험(운송·항공보험 포함)의 분류

구분	분류 기준
적하	화물의 해상운송 위험을 보장
선박	선박에 대한 손해를 보장
해양 종합	해양건설위험 등 해상활동 중 위험을 보장
해양 책임	해양오염배상책임보험 등 해상에서의 배상책임을 보장(선박, 해양종합 제외)
운송	육상 및 내륙운송화물의 위험보장
항공 - 재물	항공기의 운항, 항해 등 항공기 관련 손해보장
항공 - 배상책임	항공기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보장
우주 - 재물	인공위성 등의 성공적 발사, 임무수행 등에 관련된 위험보장
우주 - 배상책임	인공위성 등의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보장
해상 기타	상기분류에 속하지 않는 해상보험 종목

자료: 금융감독원(2012),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 보험의 종류.

4) 운임이란 선박의 용선 혹은 화물이나 승객을 한 항구에서 다른 지정된 장소로 수송시키는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함.